

#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9,387,912	20,081,637
일반회계	628,041,000	18,841,230
특별회계	41,346,912	1,240,407
기타특별회계	41,346,912	1,240,407
의료급여기금	1,194,435	35,833
주차장	38,536,499	1,156,095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59,264	4,778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45,054	16,352
기반시설	28,000	840
지하수관리	871,365	26,14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295	36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972,58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의존재원 표시

국비→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기금→기, 시비→시, 특별교부세→교,  
특별조정교부금→특